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 -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김성호

I. 들어가는 말: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한국사회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

II. 고용중심복지의 한계와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이란?
2.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

III. 기본소득 개념의 주요 개념과 성서적 근거

1. 시혜에서 권리로
2. 의무에서 권리로
3.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4.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시킨다
5. 성장 중심에서 탈 성장(De-Growth)으로
6. 기본소득의 재원에 관하여

IV. 나가는 말: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적 실천을 위한 제언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8.04>

* 본고에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지칭한다.
본고는 2017년 4월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임을 알립니다.

• ABSTRACT •

A Study of Christian Social Ethical Practice regarding on the Basic Income Controversy: focused on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Kim Seong-ho (Korea Bible University)

Basic income is a new attempt to replace the labor centered capitalism by cutting off the link between labor and income. Under the crisis of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growth without employment, severe polarization, inequality, and the threa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practical pla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the theological grounds leading to the paradigm of the new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Basic Income concept.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labor in social welfare, to suggest a solution to this problem based on the concept of Basic Income and the biblical approach to Christian social welfa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it briefly reviewed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past 400 years and discussed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labor.' In particular, it discuss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oriented welfare policy' emphasized by the current social welfare states. Second, it introduced the key concepts of Basic Income as an important concept that opens the paradigm of new welfare. Then, the welfare system of Korea was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employment - oriented welfare policy' and tried to apply the Basic Income concept. Third, After examining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grounds of basic income, with a biblical interpretation, it discussed the possibility that Basic Income could bring freedom to our lives. Last, the role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Basic Income and practical alternative were suggested

Key words: Basic Income, Christian Social Welfare, Meaning of Work, Wage Labor, Poverty

I. 들어가는 말: 송과 세 모녀 사건과 한국사회 그리고 기독교사 회복지

2014년 송과구 세모녀의 죽음은 우리사회를 크게 놀라게 했고 가슴 아프게 했으며 현 복지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회의 반응은 사회복지제도를 신청만 했다면 극단적인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그 시점의 복지제도로서는 어찌해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세 모녀 사건은 한국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99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엄격한 혹은 불합리한 선별의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¹⁾ 둘째, 신청주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복지제도를 신청만 했더라면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실제로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유발하며, 본인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외에도 가구중심의 급여제도, 부양의무제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가 주목하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과 '우리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다. 세모녀가 비극적 선택을 해야만 했던 당시의 복지제도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그들의 실질소득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3만원보다 적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에는 '소득인정액'이 포

1) 실제로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가 실시한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정책'이다.

함된다. 세모녀의 경우 그들 모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정소득²⁾ 부과대상자가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³⁾ 그렇다면,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세 모녀의 상황과 욕구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했을까?

한편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 갔다고 가정해 보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집에서 놀고만 있다는 주변의 눈총에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 혹은 일 할 수 없음에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도가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떼떼하게 한 달에 50만원 혹은 30만원이라도 받았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에 대한 부담이나 주변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은 채 어머니는 잠시 쉬면서 치료를 받고, 작은 딸은 어렵지만 만화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키워갔을 것이다. 이처럼

2) 송과 세모녀는 실제 소득은 없었으나 187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추정소득은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확인소득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2015년 4월 20일 신설). 추정소득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추정소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했다. 세모녀가 오늘날 살아 돌아온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도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3)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소득내용은 재산의 소득환산에 따른 금액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간주부양비, 근로능력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에게 부과되는 추정소득 등이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조건에는 부양의무자 조항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61세로 근로 가능 연령층이며, 현행 제도는 불과 한 달 전 다치거나 소득이 단절된 경우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 첫째 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만성질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병원비 문제로 병원에 다니지 못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정한다 할지라도 고혈압과 당뇨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딸의 경우 신용불량자이지만 이는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족한 생활비로 채무에 채무를 돌며 모욕당하고, 낙담하고, 불법적인 추심을 받는 동안 국가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에 들어오려는 순간 이들에게는 ‘근로 능력’이라는 짐이 생긴다. 김윤영, 「복지3법과 세 모녀법은 우리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 송과 세모녀 사건, 그 이후」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187호, 2014, 4-8.

기본소득은 노동중심주의를 대체하여 노동과 소득의 연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⁴⁾

II. 고용중심복지의 한계와 기본소득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자산조사(means-test)나 근로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지급을 의미한다.⁵⁾ 이와 같은 기본소득의 정의는 다음의 주요 원칙을 강조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달 지급되는 정기적인(periodic) 지급이다. 둘째, 식품이나 구호품과 같은 현물, 또는 특정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바우처(voucher) 방식이 아닌 현금(cash)지급이다. 셋째, 가구(household)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individual)을 기본단위로 해서 지급된다. 넷째,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방식이 아닌,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적인(universal) 대상 선정방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다섯째, 근로의무(requirement to work)나 근로의사(willingness to work)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물론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의 대안적 분배정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실험중인 기본소득은 이를 추진하는 집단의 상이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좌파와 우파로 부터 합의를 이끌지도 못했다. 심지어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공정성, 그리고 재정마련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것은 기본소득은 기존의 근로연계복지나 탈상품화 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 즉 탈노동화 정책으로서의 복지국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주요학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본고에서 사용한 기본소득의 개념은 세계기본소득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 <http://basicincome.org/basic-income/> (검색일 2017년 3월 10일).

기본소득 개념은 1970년대 말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가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다⁶⁾. 이후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종말⁷⁾을 경험하면서 수백 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전통적인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유럽국가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정치 경제적 실험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은 요즘 핫 이슈가 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6%에 달했고, 기본소득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49.3%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중 절반 정도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의사를 밝힌 것이다. 2017년 1월 당시, 대선 주자 후보로 지목되는 8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같은 소리라고 여기거나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기본소득제 도입이 이제 곧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6) 실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시기는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카탈루냐 사상가 후안 루이스 비베스, ‘상식’의 저자 토머스 페인, 프랑스 혁명 당시 공화주의자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는 이 기본소득 개념의 선구자로 꼽힌다. 이들의 뒤를 이어 기본소득을 논의한 대표 학자로는 토머스 스펜스, 샤를 푸리에, 허버트 스펜서, 버트런드 러셀 등이 있다.

7) 제레미 리프킨은 1995년 이미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21세기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는 문명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의 예견은 현실이 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서울: 민음사, 2005), 47.

8) 이 조사에 참여한 대선주자 후보는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손학규, 유승민, 심상정이다.

한겨레 21, (2017-01-13) “이번 대선 최대 이슈는 기본소득”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2964.html. (검색일: 2017년 3월 10일).

2.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⁹⁾

사회복지의 역사는 서구 세계사에서 근대화, 혹은 산업화시기에 해당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근간은 노동력(주로 남성 가장 노동자)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의 산업구조속에서 노동을 극대화하고, 사회보험(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과 ‘소득의 재분배’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노동의 유연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신사회위협)’¹⁰⁾는 새로운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 하여, 현재 노동시장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4.0시대의 도래¹¹⁾, 4차 산업혁명, AI의 발전 등

-
- 9) 물론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의 대안적 분배정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실험중인 기본소득은 이를 추진하는 집단의 상이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좌파와 우파로 부터 합의를 이끌지도 못했다. 심지어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소득 개념이 주는 탈 노동화, 즉 노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 때문이다.
- 10) 테일러-구비는 복지국가들이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정에서 나타난 들을 “새로운 위험들(New Risk)”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신사회위협 발생 과정을 설명했다. 첫째, 전통적인 남성 일인 생계 부양모델에 기초한 복지국가가 한계를 드러내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 숙련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노령인구 증가로 인 한 기존의 연금제도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돌봄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셋째,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숙련 생산직이 줄어들고, 그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실업이나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넷째, 전통적 복지국가가 구사회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했던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사적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연금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성신형, 김성호, 「한국적 신사회위협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 연구 :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제39집, 2016, 179-212.
- 11) 자본주의 4.0이라는 용어는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sky)가 처음 소개한 용어로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의 집합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적응해온 사회 체제라고 설명하면서 역사속에서 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재조정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1.0은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 시대에서

의 변화와 함께 다가올(혹은 이미 다가온) 시대의 노동사회의 위기는 기존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이전까지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논쟁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해석’에 관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혹은 일할 수 있는 자와 일할 수 없는 자)’의 구분과 ‘보편과 선별’의 이분법적 대립은 변함없이 중요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서 있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모든 진영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본적 전제는 하나이다. 바로 ‘고용을 통한 생산과 소비’를 강조하는 경제 원리이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작동하는 엔진은 경쟁을 통한 효율과 성과였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는 시대의 화두는 더 이상 성장이나 경쟁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1970년대 말 부터 고용중심복지(혹은 근로연계 복지나 노동복지)¹²⁾는 전 세계적인 복지개편의 중심축이 되어왔다.¹³⁾ 고용중심복지는 서구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복지개혁의 주요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김대중

대공황 (1929)까지, 자본주의 2.0은 1930년대 케인지안 경제정책을 도입한 뉴딜 시기 부터 1970년 발 석유파동까지, 자본주의 3.0은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시대 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로 분류된다. 현재는 자본주의 4.0시대가 열리는 시대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혼합경제로 불린다. 최종태, 「자본주의 4.0시대의 사회적기업과 경영학」, 사회적기업학회 『사회적기업연구』 제4권 제2호, 2011. 5-7.

- 12) 미국의 경우는 workfare(근로연계형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국은 welfare-to-work(복지에서 노동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3)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민주당 출신 클린턴 행정부가 대대적인 복지개혁(welfare)을 감행하여 1996년 시행한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를 들 수 있다. 미국이 빈곤가정과 자녀를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공공부조를 제공했던 AFDC가 한시적이고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TANF로 전환되었다. 이는 미국의 빈곤층 복지대상자들이 노동시장을 통해 자립과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복지수혜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정부의 ‘생산적 복지’¹⁴⁾가 대표적인 예이다. 노무현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고용친화적 복지’ 담론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과 복지의 통합은 지난 20여 년간 복지정책의 중심화되었다. 그 중 자활사업은 한국의 대표적 고용중심복지로 꼽히고 있다.¹⁵⁾ 고용중심복지는 시장경제활성화와 경제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¹⁶⁾ 고용중심복지 개념은 근로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탈계층화를 들어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조합주의, 시민주의의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¹⁷⁾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

14) ‘생산에 기여하거나 참여하는 복지’로 해석되는 ‘생산적복지(productive welfare)’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가운데,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적복지라는 용어의 등장은 1997년 금융 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국민의 정부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표명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개념의 변화는 기존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과도한 정부개입과 복지지출로 인해 국가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증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주장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었다.

15) 김수영,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3호, 2012, 203-204.

16) 조영훈,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45호, 2000, 92.

17) 이 세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시민주의 모델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증대와 소득평등을 추구하지만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보수주의적(조합주의적) 모델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재정건전성과 소득평등을 추구하지만 고용창출에 실패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이며 민간부문에 서도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고용증대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높은 사회보장세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고용증대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낳는다. 셋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한 이후 가장 모범적으로 탈 상품화와 탈계층화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중심복지는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아닌 상품화로 다시 회귀하는 ‘재상품화’를 지향함으로써, 복지와 노동의 유기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의 복지모델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가 에스핑 언더슨이 지적한 ‘탈상품화’의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고용중심적 복지를 계속 유지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때 취업할 수 있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다. 제조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자리 양극화가 가속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과 인공지능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완전고용을 실현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빈곤과 양극화의 확산, 불평등과 인간소의 현상 역시 기존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복지제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서구사회가 경험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경험하기도 전에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됨으로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의 요소를 모두 갖게 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실시하지만 소득불평등 혹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민간부문에서 낮은 임금의 서비스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증대시키고 재정압박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있지만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딜레마는 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증대가 제조업에서처럼 지속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 어려우며, 결국 평등한 임금(소득)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문제가 됨을 설명하는데 유효하다.

만 신자유주의 영향을 그대로 적용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 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고용중심적 복지를 주장하게 되었는가? 이는 세계적 신자유주의하의 근로연계복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조하는 노동에 관한 가치’이다. 이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노동에 관한 가치를 정의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¹⁸⁾

III. 기본소득 개념의 주요 개념과 성서적 근거

1. 시혜에서 권리로

복지국가에 들어서면서 복지는 낙인을 동반하는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가 되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노동에 대한 의무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강조하는 조건이다.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기본소득 개념이 갖는 힘과 차별성은 기본소득이 주장하는 ‘무조건성(unconditional)’에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무조건성을 띠려면 다음의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회보험과 같은 사전 기여가 필요 없으며, 한 국가의 법적 시민에게만

18)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의 발전은 자본주의 발전과 항상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 발달사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지향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은 동시대의 정치와 경제 사회구조 속에서 형성된 시민의 의무와 권리, 노동 윤리 등 주요 가치와 사상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의 담론을 이끈 철학적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자유(천부인권)와 국가와의 계약 관계’, 그리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노동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사상적 논의의 큰 흐름에 윤리적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세 가지 전제 이외에도 (1)개인에게 지급되며, (2)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지고, (3)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함을 묻지 않는다.¹⁹⁾ 여기서 나타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성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자 피조물로서 누려야 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전제 중에서도, 기독교인을 비롯한 다수의 현대인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은 바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즉 ‘일을 안 해도 공짜로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더 나아가서는 일할 의사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노동과 소득의 분리’는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욥기 5장 7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언 6:6-11)”와 같은 성경구절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속에 오늘날 삶의 중요한 가치로 정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이후 강조된 노동과 직업에 대한 윤리관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근면을 강조하는 기독교전통에서 게으름을 비난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게으름은 신에게 헌신하지 않고 신의 목적을 어기는 일로 여겨졌다. 즉 신앙이 부족한 것이며, 바로 악으로 여겼다. 이 전통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에 깊이 뿌리를 내린 직업윤리와 노동윤리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는 인간의 세속적 사회활동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19) Philippe Van Parijs, 「Why Is Basic Income More Relevant Today Than Ever Before?」- Basic Income and Social Democracy, 『The 16th BIEN Congress』, 2016. 14-16.

를 부여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들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전통적 카톨릭과 차별되는 종교개혁의 결과 중 하나는 소명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조직적 노동에 대한 도덕적 강조와 종교적 재가'라는 것이었다.²⁰⁾ 막스 베버는 노동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²¹⁾ 또한 칼뱅은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여 노동을 신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여겼고 그 결과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게으름(시간 낭비)은 신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악으로 여겼다.²²⁾ 절약과 근면(금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청교도 정신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직업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획득한 부가 바로 자신이 소명(신의 부름)을 받은 증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교도 윤리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²³⁾

하지만 루터가 강조했던 직업과 소명의식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
- 20) 양낙홍,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신학적 분석과 평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6호, 2013, 198.
- 21) 김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기독교문화와 윤리」,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제21권 2호, 2010, 69-70.
- 22) 루터는 “노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으며, 빈둥거리며 지내는 것은 신체와 생명을 망친다고 했다. 사람은 노동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Beruf'(직업 또는 소명이라는 뜻의 독일어) 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루터였다. Beruf는 영어의 calling에 해당되는데, 이는 '신이 인간에게 명령하고 부여한 부름'이라는 소명의 의미와 천직(타고난 직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직업은 신이 주신 소명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옥순, 『게으름은 왜 죄가 되었나』, (파주: 서해문집, 2012).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금욕과 탐욕 속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 김상희 풀어씀 (서울: 풀빛, 2010). 노명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파주:사계절, 2009).
- 23)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메시아에서의 전원시 유고 (1881년 봄-1882년 여름)』안성찬, 홍사현 옮김. (서울: 책세상, 2005). 니체에 따르면 노동에 대한 도덕적 가치평가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 19세기부터 산업화가 완성되는 시기에 노동은 창조의 원천, 문명의 원동력으로 추앙받는 철학 속 주요한 개념이 되었다. 또한 기독교 윤리학에 따른 노동의 찬양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삶의 충동들을 길들이며 노예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굳어진 것은 근대 사회가 들어선 뒤의 일이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사람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생산성, 수확, 소득이나 성과에 따라 평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노동의 봉사적 성격’을 강조했다. 노동에 의한 소득이 중요한 경제원리가 되고, 노동이 화폐처럼 상품으로 팔릴 수 있다는 신념이 탄생한 것은 불과 200백여 년 전의 일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성서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²⁴⁾ 다시 말해 기독교의 금욕주의가 근대자본주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자들은 재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²⁵⁾

2. 의무에서 권리로

시민권²⁶⁾을 강조하는 복지국가는 시민의 자격과 관련된 호혜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에서 복지를 누릴 시민의 권리인 시민권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누리는 지위이자 권리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시민권적 지위와 권리는 동시에 시민의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조건으로

24)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50집. (2010).

25) 강사문,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경제원리」, 한국성서학연구소 『성서마당』 2009년 봄호, 12-13.

26) 복지국가의 사상적 근거가 된 ‘시민권’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자로 평가되는 T. H. Marshall은 시민권을 ‘어떤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지위로 부여하고 이 지위가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Marshall은 시민권은 19세기 동안 공민권에서 정치권으로,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사회권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원, 「시민권의 확장: 산업적 시민권의 개념과 의의」,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0집. 2호. (2013), 127.

강조하는, 즉 근로를 전제하는 워크페어(workfare, 근로연계복지)와 연결되었다. 따라서 시민권의 실현은 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가의 사회복지 제공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노동에 근거한 기여로 강조된다면, 기본소득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무임승차에 의존하는 공정하지 않는 제도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태한 자가 부지런한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이르게 된다. 이같이 시민의 의무로 부과되는 노동중심복지정책은 복지 수급자들에게 불안정하거나 위협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빈곤의 악순환과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노동중심의 복지정책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노리고 있다. 반면에 노동의 탈 상품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본소득 개념은 노동중심복지를 대체할 구체적인 대안적 전략이다.²⁷⁾ 하나님은 주신 우리의 권리는 값없이 주신 것이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시대의 일용할 양식인 것이다.²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빌 4:19).”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고후 8:13)”

이러한 생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마20:1-16). 고용된 일꾼이 일을 시작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과 임금의 성서적인 생각의 기초이다. 출발점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주신 권리이다.

27) 이명현,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2010), 435.

28) ‘희년함께’는 2017년 3월 10일 “기본소득은 4차 산업시대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했다.

3.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영국 빈민법 시대에 빈민에게 부과했던 노동의 의무가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된 ‘나태’에 대한 처벌의 형식이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자활지원 사업의 근로의무(노동강조)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활을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의존과 실직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전제는 인권 침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민주적인 잠재력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고용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인간관계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기본소득은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나은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확대되면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 시간을 더 누리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²⁹⁾ 아마티아 센은 ‘인간의 역량’을 강조하는데, 그가 말하는 인간의 역량은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과 동시에 확대되는 역량이다.³⁰⁾ 단순히 소득이나 효용

29) 광노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1) -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제18권 2호, 2007, 191.

30)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대가이며 경제학계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능(functioning)이 필요하고 그것을 갖추는 것이 역량이다. 모든 사람의 역량이 커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발전이다. 센의 자유란 곧 역량의 확대이다. 개인이 나름대로

의 증대로 발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삶이 없으면 개인의 꿈도 없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나 꿈, 그리고 행복을 실현하기 어렵다. 많은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 공무원이거나 건물주인 이 나라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들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경쟁에 지쳐하기 보다는 자신 있게 좋아하는 일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농하기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은 그들이 생계걱정 없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정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유를 증진한다.³¹⁾

이외에도 기본소득은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고용 중심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통한 자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지수급자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그 결과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을 양산하게 된다.³²⁾ 또한 고용 감소 및 고용의 질적 저하는 소득불평등을 넘어 소득양극화로 이어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곧 그의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미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옮김. (서울:갈라파고스, 2013)

31) 2016년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당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현금대신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소비증가를 불러오는 효과로 인해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상품권 지급은 수급자가 현금을 오용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32)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 수준이 낮고, 직업 숙련도와 작업장 안전도가 낮으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해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불안정노동자들을 예전에 부르조아와 대비해서 부르던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 대신에 프레카리아트(*precarariat*)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숨겨진 실업자, 실업자들을 총괄하면 사실상의 경제활동인구의 62%가 불안정노동자이다. 강남훈,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2호, (2013), 14-21.

다. 이와는 반대로 기본소득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의 대가가 적절하게 보상되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³³⁾ 실제로 기본소득은 여러 경로로 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첫째, 수요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둘째, 창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소득 안정성이 창의성을 높이고 모험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셋째, 약간의 소득만 뒷받침되면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넷째, 농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하기 싫거나 위험한 일, 또는 보수가 적은 일은 기피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³⁴⁾

“사람이 자기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전3:22)”,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전 2:24).” 이처럼 모든 일은 개인적으로는 성취감을, 공동체에게는 봉사를, 피조계에는 돌봄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이해이다.³⁵⁾

4.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시킨다

대다수의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 대신 지속적인 거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자격조건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제시한 반

33) 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정의했다. 김사우 외 (2013).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26호. 25.

34) 강남훈. 「왜 기본소득인가」,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6. 6월호, 53-54.

35) 김방룡. 「노동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9집. (2005). 113-145.

빠레이스도 그 지급대상을 법률적 의미의 시민이 아닌 일정한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거주민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³⁶⁾ 따라서 기본소득의 목적은 국가의 시민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이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주자는 것이다.³⁷⁾ 이러한 관점은 현재 전체인구의 4%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는 우리나라가 눈여겨 봐야할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혜와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그들이 더 이상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주민을 공정하게 환대³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기본소득의 기본 전제인 ‘개인에게 지급하라’는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구위주로 사회복지급여가 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유익하다. 또한 엄격하게 개인에게 지급되면 자발적으로 가족을 해체하게 되는 함정을 없앨 수 있다.³⁹⁾ 이외에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임금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킨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노동자에게 ‘임금’을 ‘그 가족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그 결과 여성은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남편의 임금에 자신의 생계를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아내의 ‘자기 통치권’을 ‘소외’시키

36) 반 빠레이스는 이외에도 아동, 연금수급자, 그리고 수감자나 보호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필리페 반 빠레이스,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툼, 필리페 반 빠레이스 외,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서울: 나눔의집, 2010), 37.

37) 바티스트 밀롱도 (2012). 조건없이 기본소득. 권효정 옮김. 바다출판사. 서울. 31.

38)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호 (2016).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 복지의 과제 :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36집. (2016). 41-47.

39)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툼, 필리페 반 빠레이스 외. (2010). 같은 책. pp. 28-29.

는 결과로 귀결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가사노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무급노동(unpaid work)’이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촉진된다.⁴⁰⁾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활동 중에서 육아, 돌봄,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 등 60% 정도는 무급노동의 형태를 가진다.⁴¹⁾ 기본소득의 이념은 아내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shadow work)’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노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기본소득네트워크 활동가인 사라트 다발라는 2016 세계기본소득 총회에 참석해서 한 일화를 소개했다. 가부장문화가 강한 인도에서 “아빠, 왜 내 기본소득으로 술을 마셔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어린이를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어린이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발언권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치는 금전적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⁴²⁾ 소수자나 약자를 비롯한 모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갈라디아서 4:28).

더 평등하고(more egalitarian), 더 해방적이며(more emancipating), 덜 남성 중심적인(less male-biased) 관점에서 접근할 때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실현이 가능해진다.⁴³⁾

40)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4호, (2013). 105-115.

41) 금민, 「기본소득,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야 하나?」, 우리신학연구소 『카톨릭 평론』 제4호 (2016), 16.

42) 오마이뉴스 (2016. 08.05). “아빠, 왜 내 기본소득으로 술 마셔요?” [조건 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 세계는 이미 실험 중 (검색일 2017. 03. 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935

43) Philippe van Parijs (2016). 같은 글. p.14.

5. 성장 중심에서 탈 성장(De-Growth)으로

기본소득의 가치가 주장하는 임금노동의 의무로부터의 해방은 탈 성장적인 생태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안빈낙도와 소박함, 자족, 연대와 돌봄 등의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 의미를 강조하는 생태사회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⁴⁴⁾ 노동과 직업에 대한 개념, 게으름과 휴식에 대한 생각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성장만능주의의 깃발 하에 쉽게 달려온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생태신학이 주장하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청지기 사명’과 맥을 같이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파괴되어가고 있다. 이원론적 사유에 근거한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이 성서를 ‘인간중심’으로 해석하여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받은 통치자이자 청지기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처리해도 된다는 해석은 창조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며, 이점에 의해 인간과 자연은 결합되어 있다. 창세기 1:28에 나타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파괴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자애롭고 정의롭게 자연을 돌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⁴⁵⁾ 자연과 조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여유와 소박한 풍요를 즐기는 삶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44) 김용민, 「노동의 종말과 ‘기본소득’ 그리고 대안사회」, 문학과 환경학회, 『문학과 환경』, 제13권 2호, (2014), 7-38.

45) 최창국 (2007), 「생태와 기독교 교육 - 창세기 1:28을 중심으로 본 인간과 자연」, 개신대학원대학교, 『개신논집』, 제7호, (2017), 215-230.

6. 기본소득의 재원에 관하여

기본소득의 가장 큰 쟁점인 재원 마련에 관한 대안으로는 (1)금융소득 및 부동산과 관련된 불로소득에 대해 누진적 소득세 (2)부유세 및 상속세 (3)불필요한 정부예산이나 방위비를 감축하는 방안 (4)탄소 배출권과 같은 환경세나 생태세의 도입⁴⁶⁾ (5) 석유나 화폐발행,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⁴⁷⁾와 같은 공공재로 인한 수입 등 이다. 이외에도 가장 보편적복지인 기본소득제는 선별주의 복지정책에 드는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중 공유자산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의 근거로 제시되는데, 자연을 모두의 공유물로 보며, 따라서 자연에서 유래하는 부 역시 모두가 향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⁴⁸⁾ 이는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배정의와 일치한다. 이를 현대의 분배정의 원칙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땅의 분배방식에는 ‘필요와 권리’의 개념이 등장한다. 즉 권리원칙에 따라 지파 간에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제비 뽑기로 위치를 정하게 했으며, 땅의 크기는 각 지파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인구규모에 비례하도록 했다(민 26:52-56; 33-54).⁴⁹⁾ 창조세계에 대한 근

46) 피터 반스는 이를 배당이라고 칭했다. 이 같은 배당은 재분배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적법한 소득이다. 피터 반스 (2014),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위대선 옮김. 갈마바람: 서울.

47)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서 벌어들이는 이윤을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해서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배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는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해왔으므로, 인공지능과 ICT의 발전에 기여한 정보는 토지처럼 공유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정보의 소유권은 개개인에게 있고 개개인은 그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48) 자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은 16세기 바이브스, 18세기의 토마스 페인, 19세기의 헨리 조지로 계승되어 현재 로버트슨, 데일리 및 유럽 녹색당 다수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권정임, 같은 책. 105-115.

49) 이흥구, 『하나님의 경제학』. (서울: 두란노, 2011), 132-133.

원적 소유주는 국가도 개인도 아닌 하나님이란 점을 인식하고, 공유재인 창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창조의 은혜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구약성서의 안식년제도와 희년제도, 그리고 구제를 위한 십일조 제도에도 잘 드러난다. 안식년과 희년은 다른 사람(노예)이나 재산(토지)을 더 얻어서 부를 증식하게 된 경우 그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라는 정신이다. 십일조 역시 토지가 없는 사람들(대표적으로는 레위지파와 그 외에 사람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공정한 나눔을 실천했다.

IV. 나가는 말: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적 실천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성서적인 근거에서 사회복지적 적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논의했다. 이제 그 실천적인 제안을 함께 생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다음의 제안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첫째, 500년 전 종교개혁 운동이 그랬듯이 성서적인 근거와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윤리적 토대를 기독교가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과 복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기독교 교육에 반영하고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사회복지 기관과 교육기관의 행정에 있어서 경쟁, 효율,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복지행정 학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행정 교과목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행정 가치와 방법론을 다루

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재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면서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셋째, 또한 기독교공동체 정신과 희년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사회운동을 확산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희년은 노예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소극적 자유) 토지를 지급받아 자립할 수 있음(적극적 자유)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본소득 정신과 유사한 점이 많다. ‘주빌리은행’⁵⁰⁾ 이나 ‘희년함께’⁵¹⁾ 등은 기독교계가 희년정신을 잘 실천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가 앞장서서 성장, 소비, 경쟁, 성과, 효율, 세계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연대, 호혜, 생태를 중요시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마을공동체 운동과 함께 기독교 사회적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과 삶의 방식’은 좋은 대안이 된다.⁵²⁾

넷째,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운동과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는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캠페인 중 5년 전 대통령 경선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대선의 많은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임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사회는 ‘노동과 삶의 방식’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50)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생긴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은행으로 성남시에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51)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성서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이 2010년 7월 13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운동이다. <http://landliberty.org/x/>

52) 세계 경제는 지역사회에서 협력적 공유경제의 모델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탈지역화가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응하는 대안으로서의 지역공동체가 강조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처럼 일어나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상호 호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운동을 기독교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김성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31집, 2015, 143.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정치적, 실천적 운동의 상당한 부분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⁵³⁾ 하지만 한국 기독교 내에서의 논의와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교파를 초월한 연대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핵심 기관인 교회의 변화도 절실하다. 더 이상 외형적 성장⁵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내적성장, Internal Growth)⁵⁵⁾에 치중해야 한다. 또한 눈을 지역사회로 돌려서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몸과 정신, 그리고 영성을 갖고 온전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은 ‘찾아가는 복지’가 되었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공무원을 선출해서 애써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매일 만나고 부딪치는 사람들인 것이다. 동주민센터도 열심히 우리 이웃을 찾아가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교회가 이 사회를 책임지는 자세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거시적 차원의 사회복지적인 활동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계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욱 새

53)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년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그는 기본소득에서 해답을 찾았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며, 대표적인 인물은 성공회 투투 주교이다. 독일에서는 카톨릭과 루터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는 카톨릭 단체의 주도로 기본소득네트워크를 창립했다. 금민 (2016) 앞의 글. 14-15.

54) 교회의 성장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가 기형적으로 추구하는 물질숭배를 따르는 방식이다. 대형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이며, 대형교회의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라는 인식은 바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55)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의 영적성장을 의미한다. 교회의 외적성장주의는 교회의 ‘개교회주의 강화’를 부추겼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물량주의가 교회 내에 팽배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한국교회가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채 개인구원과 교회성장에만 치우치는 결과를 낳았다. 안기성, 교회성장원리가 한국교회성장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개혁주의 교회성장』. 제4호, 2009. 1-40.

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구유럽과 미국의 주도로 이끌어온 근대사와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시대를 열 때마다 새 동력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실천을 주도해왔다. 이제 한 번 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시작할 때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승훈, 『사회복지발달사』(서울: 나눔의 집, 2010)
- 노명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노동의 이유를 묻다』(과주: 사계절, 2009).
- 박병현, 『사회복지의 역사』(서울: 공동체, 2010)
-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서울: 공동체, 2008)
- 이옥순, 『게으름은 왜 죄가 되었나』(과주: 서해문집, 2012).
- 이홍구, 『하나님의 경제학』(서울: 두란노, 2011).

• 번역서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금욕과 탐욕 속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 김상희 풀어씀(서울: 풀빛, 2010).
- 바티스트 밀롱도, 『조진없이 기본소득』, 권효정 옮김(서울: 바다출판사, 2012).
- 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김원기 옮김(서울: 갈라파고스, 2013).
-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서울: 민음사, 2005).
-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메시아에서의 전원시 유고』(1881년 봄-1882년 여름) 안성찬, 홍사현 옮김(서울: 책세상, 2005).
- 피터 반스,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위대선 옮김(서울: 갈마바람, 2014).

• 학술논문

- 강남훈,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2호, 2013, 12-42.
- _____, 『왜 기본소득인가』,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6, 6월호, 44-55.
- 강사문,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경제원리』, 한국성서학연구소 『성서마당』 2009년 봄호, 10-24.
- 강원돈,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50 집, 2010, 177-215.

- 공정원, 「시민권의 확장: 산업적 시민권의 개념과 의의」,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30집 2호, 2013, 125-142.
- 곽노완,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1) - 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제18권 2호, 2007, 183-218.
-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4호, 2013, 105-141.
- 금민, 「기본소득,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야 하나?」 우리신학연구소 『키톨릭 평론』, 제4호, 2016, 7-18.
- 김방룡, 「노동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9집, 2005, 113-145.
- 김사우, 조주현, 정도영, 김효연, 이만우, 박주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26집, 2013, 1-104.
- 김성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연구: 미래 지역사회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31집, 2015, 121-149.
- _____,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36집, 2016, 37-75.
- 김수영,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3호, 2012, 203-229.
- 김용민, 「노동의 종말과 ‘기본소득’ 그리고 대안사회」, 문학과 환경학회, 『문학과 환경』, 제13권 2호, 2014, 7-35.
- 김윤영, 「복지3법과 세 모녀법은 우리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 송파 세모녀 사건, 그 이후」,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187호, 2014, 4-8.
- 김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기독교문화와 윤리」,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제21권 2호, 2010, 69-93.
- 성신형, 김성호, 한국적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 연구: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선교와 신학』, 제39집, 2016, 179-212.
- 안기성, 「교회성장원리가 한국교회성장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개혁주의 교회성장』, 제4호, 2009, 1-40.

- 양낙홍,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신학적 분석과 평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6호, 2013, 189-225.
- 이명현,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
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2010, 433-457.
- 조영훈,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45호, 2000, 90-113.
- 최종태, 「자본주의 4.0시대의 사회적기업과 경영학」, 사회적기업학회, 『사회적기
업연구』, 제4권 제2호, 2011, 5-49.
- 최창국, 「생태와 기독교 교육 - 창세기 1:28을 중심으로 본 인간과 자연」, 개신대학
원대학교, 『개신논집』, 제7호, 2017, 215-243.
- Philippe Van Parijs, 「Why Is Basic Income More Relevant Today Than Ever
Before?- Basic Income and Social Democracy」, 『The 16th BIEN Congress』,
2016, 14-16.

• 인터넷자료

- 오마이뉴스 (2016. 08.05). “아빠, 왜 내 기본소득으로 술 마셔요?” [조건 없이, 모
두에게 기본소득, 세계는 이미 실험 중 (검색일 2017. 03. 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
00223193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935)
- 한겨레 21. (2017-01-13) “이번 대선 최대 이슈는 기본소득”(검색일: 2017년 3월 10일).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2964.html.
- <http://landliberty.org/x/>

논문투고일: 2017년 06월 30일

심사게시일: 2017년 0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기본소득은 노동중심주의를 대체하여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고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노동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위협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절박한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끌 성서해석과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본소득 개념과 이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첫째,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큰 흐름을 관통하는 ‘노동’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논했다. 특히 현재 복지국가가 강조하는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했다. 둘째,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중요한 개념인 기본 소득의 주요 개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몇 년 전 우리사회를 반성하게 했던 ‘송과 세 모녀 사건’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의 한계를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본 뒤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시도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살펴본 뒤,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성서적 해석과 함께 논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어: 기본소득, 기독교 사회복지, 노동의 의미, 임금노동, 빈곤
